

「마포농수산물시장 수산매장 CCTV 설치 관련」
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결과 게시문

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기 실시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4의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11. 2. 24

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

1. 공고기간 : 2011년 2월 18일 ~ 2011년 02월 23일 (6일간)
2. 사업개요
 -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.
 - 공사기간 : 2011년 02월 25일
 - 설치장소 : 수산매장 입주자 매장 및 입구통로(6개소)
3.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 : 없음
4. 검토의견

마포농수산물시장 각종 도난사건 예방과 호객행위 단속 및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바, 특이 사항이 없어, 이에 우리공단에서 지정한 위치에 방법용 CCTV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합니다.
끝.